

제4장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제4장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손해배상 사례 01 2022대전조정1/2 각 손해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손해배상 400만 원)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해당 발언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방송해 음성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우려한 캠핑장 측의 자제 요청에도 소방관들이 캠핑장에서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는 등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아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하면서, 캠핑장 관계자인 신청인과의 통화내용을 녹음 후 방송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취재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후 자신의 음성을 뉴스에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통화 내용을 방송했으며, 음성을 변조하긴 하였으나 사건의 개요, 통화자의 억양과 어조 등을 고려하면 직장 동료들이 신청인이 제보자라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보도 이후 담당업무 변경 등 고충이 커져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신청인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고,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음성 변조 조치를 한 후 방송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취재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나 타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해 공개하는 경우는 음성권 침해에 해당함을 지적하며 양 측이 적정한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협의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손해배상금 400만 원 지급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 **[전략]** ○○의 한 캠핑장에서 평일 대낮부터 열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술판을 벌여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캠핑장 측의 주의에도 개의치 않고 난동을 부린 사람들, 알고 봤더니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중략]**

[캠핑장 관계자(음성변조) : “5인 이상, 또 8인 이상 집결하지 말라 이 얘기를 했고요 통고를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죠.”] **[중략]**

[캠핑장 관계자(음성변조) : “술이 떡이 돼가지고 사무실로 왔어요. 그러고서 이 XX (방역) 서류 내놓으라 그런 거지.”]

[후략]

② 힐링캠프를 명목으로 캠핑장에서 대낮부터 술판을 벌인 소방관들, 방역수칙 위반을 우려한 캠핑장 측의 자제 요청에도, 경찰의 출동에도, 소란스러운 술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략]**

[캠핑장 관계자(음성변조) : “(밤 10시 반쯤) 소방관들이 난동을 부린다. 조치를 취해달라 그랬더니, 조용해질 테니까 기다려 보시라 그랬는데, 전화가 왔는데도 똑같았어요. 11시 40분쯤에 (전화를) 다시 한 거죠, 데려가셔라 … ”] **[중략]**

[캠핑장 관계자(음성변조) : “새벽 1시 40분까지 떠들고 그래서 그때 내가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내버려 두고 들어왔죠.”] **[후략]**

조정성립사항

손해배상

- 피신청인 언론사는 20XX년 X월 XX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손해배상 사례 02 2022서울조정267 손해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손해배상 50만 원)

언론사가 신청인이 출연한 모 유튜브 채널 영상 이미지를 동의 없이 보도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실외기가 4개 있는 자취방'을 소개한 유튜브 채널 영상 속 이미지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모습이 담긴 해당 유튜브 영상 이미지를 게재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유튜브 채널 출연에 승낙한 것일 뿐 해당 영상이 기사화되는 것에 동의한바 없으며, 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조차 하지 않아 주위에서 본인임을 알아보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신청인을 비난하는 악플 및 부정적 댓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조정대상보도 삭제와 함께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에 삽입된 이미지는 이미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됐고,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사전 허락을 얻어 사용했으며, 추후 신청인의 초상을 블러(blur) 처리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만큼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유튜브 영상 출연자의 초상을 보도 사진으로 쓰기 위해서는 출연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처음부터 모자이크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신청인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될 필요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5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구 신축 오피스텔 1억 9천 전셋집 스펙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에는 '실외기가 4개 있는 자취방'이 소개됐다.

거주자는 실외기가 4개 있는 테라스를 소개하며 “이 테라스에 반해 계약했는데 추워서 겨울엔 못 나온다”고 말했다.

해당 오피스텔을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름에 덥고 미관상 안 예쁘긴 한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면서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을 땐 테라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소개했다. [중략] 거주자는 “여기서 테라스 파티하면 너무 좋다”면서 “방도 아니고 테라스도 아닌 느낌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가벽을 설치할까 했는데 저는 2년 뒤 떠날 건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살고 있다”면서 “우드폼 블라인드로 밖을 가리고 있다. 유리가 없고 방충망만 있다. 유리로 막아놓으면 불법이다”라고 전했다. [후략]

※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초상이 공개된 부분은 수록하지 않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20XX년 X월 XX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손해배상 사례 03 2022서울조정567·568·569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정보도, 손해배상 500만 원)

사립대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관련 보도에서 언론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와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한 대학교가 소속 교수 A에 대한 면직을 의결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면직절차중지요구”가 뒤늦게 접수돼 논란이 되고 있고, A 교수는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교의 비리 의혹 10건에 대해 공익 제보했으나 9건은 무혐의 처리되고 단지 1건만 담당자 주의조치 및 기관경고로 마무리됐을 뿐이라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대학 측이 본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기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의 면직 절차 중지 요구 결정이 있었으며, 공문의 통지도 바로 같은 날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이 제보한 비리는 10건이 훨씬 넘고, 이와 관련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임원 취임 승인취소 등 처분이 내려진 바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대학교 소속 임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언론사가 허위의 내용을 보도해 교수이자 공익제보자인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됐다고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3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내용은 공익에 관한 사항이고, 취재원 진술내용, 수사기관 자료, 교수 및 교직원 성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도한 만큼 신청인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사건기록,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및 처리결과 통지 여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사건 진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인정되고, 보도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대학교가 지난 X월 XX일 의결을 이미 마친 “A 교수 면직의결”에 대해, 28일 뒤늦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면직절차증지요구”가 접수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의혹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났음에도, 오히려 허위이력 등 의혹이 있는 공익제보자를 권익위가 이처럼 보호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대는 A 교수의 임용 당시 허위이력이 의심돼, A 교수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A 교수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증대서류 미제출’로 의결을 통해 면직 처분된 사건이다. 의결을 마친 날이 X월 XX일이다.

그러나 권익위의 면직절차증지 요구가 XX일 뒤늦게 접수돼, 학교 측이 이에 대해 항변하고 있는 것. **[중략]**

△△△△는 1일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 해명이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답변을 듣지 못했다. **[중략]**

그러나 결국 A 교수가 제기한 ○○대학교 관련 의혹 10건 중 9건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단지 1건만 담당자 주의조치 및 기관경고로 마무리됐을 뿐이다. **[중략]**

이명을 요구한 모 교수는 “A 교수는 교수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언론에 우리 대학을 마치 비리집단으로 매도해 학교의 명예실추가 심각하다.”며 “교직원 70%에 해당하는 300여 명의 교직원들은 A 교수 등 교수노조의 주장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대학고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대다수 구성원의 권익이 아닌 극소수 개인의 권익만 옹호하는 권익위의 이같은 처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대 “A교수 이미 면직됐는데” ... 국민권익위, 뒤늦게 면직절차증지 ‘논란’> 관련

본문내용: 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에서 20XX년 X월 XX일 이미 의결을 마친 A 교수 면직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가 28일 뒤늦게 면직절차증지를 요구했으며, A 교수가 교육부에 제보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는 A 교수 면직에 대해 ○○대학교의 이사회 의결 전인 20XX년 2월 25일 면직절차증지를 요구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에 관한 공문이 당일 ○○대학교에 전달되었으며, A 교수가 제기한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대학교 소속 임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전체기사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보도문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활자는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방식과 동일하게 하며,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하되, 활자 및 크기는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과 동일하게 하며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등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으로 금 5,000,000원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손해배상 사례 04 2022경기조정149·150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열람차단, 손해배상 1,000만 원)

언론사가 명백히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신청인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원보도 열람차단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 캠프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여성 직원이 성추행과 성희롱, 성폭행을 당했음을 암시하는 말을 캠프 내에서 수시로 들었다'는 캠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피해 대상으로 지목된 신청인의 얼굴이 공개된 동영상과 사진을 게재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선거 캠프에서 근무하는 동안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그러한 피해를 암시하는 말도 들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신청인 언론사는 캠프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배포한 후보자 참석 행사 사진에 대해 신청인이 후보자와 데이트하는 것 같은 사진이라고 설명하며 신청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등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취지에 따라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적절한 금액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양 측이 협의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 성추행 사건」 △△△ 前□□□□ 캠프」 관련

본문내용: 본 인터넷신문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결과, △△△ 캠프의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된 ○○○는 성추행 등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여론에 노출된 사진 역시 ◇◇◇◇으로서 ○○○가 직접 배포한 보도자료용 사진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은 초기화면 상단에 고정하여 게재한다.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정정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최초 게재시점부터 12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열람차단

- 피신청인은 20XX년 X월 XX일(금) 09:00까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열람을 완전히 차단한다.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10,000,000원을 지급하되, 20XX년 X월 X일(목)까지 5,000,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20XX년 XX월 X일(금)까지 나머지 5,000,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각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